미국의 연금개혁 논의와 시사점

尹錫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에 의존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을 채택하고 있어 수정적립방식(Modified Funded System)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는 상이하다. 1940년부터 급여가 시작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는 2020년 이후에는 심각한 재정 불안정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머지않아 겪게 될 사회보장 신탁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현재 사회보장 개혁논의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20년까지는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급속한 지출에 기인하여 2030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기금 재정 불안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국은 공통 문제에 직면해 있고, 적립된 기금의 많은 부문이 정부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1]. 미국의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 건실화 노력은 2030년경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사회보장제도 개혁 논의 연혁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 한국의 경우 1997년 9월말 현재 전체 기금 운용액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재무성 특별 채권을 통해 기금 전액이 공공부문에 운용되고 있다.

이 제정된 이래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적 지지도 역시 매우 높았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상황은 달라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판을 촉발한 직접적인 요인은 사회보장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사회보장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급속한 지출증가는 노령·유족연금(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기금의 재정수지를 악화시켜 1970년대말 30억달러의 적자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훗날 레이건(Reagan)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의장으로 활약한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이 1974년 발표한 논문을 시발로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교한 계량 경제학 방법을 사용한 펠드스타인의 논문은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미국의 자본 스톡이 38%나 감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줄을 이어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미국내에서 높아져 갔다. 동시에 미국경제의 계속되는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는 사회보장 개혁 논의에 힘을 실어 주었다. 특히 사회보장기금은 1982년 최악의 재정상황을 기록하여 OASI의 경우 급기야 113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함으로써 노령·유족연금 보험 급여의 지불유예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급해진 레이건 행정부는 초당파적인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결과로 1983년 사회보장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입증대를 위해 고용주와 피용자의 사회보장 분담세율을 각각 5.4%에서 5.7%(총 세율은 11.4%)로 인상하였다. 둘째, 급여 수준 삭감을 위한 조치로 사회보장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덧붙여 급여수준 인상의 근거가 되는 생활비 조정(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 기준을 회계년(fiscal year)에서 역년(calendar year)으로 변경하였다. 미국의 회계기준은 6월이 기점이기 때문에 이 조치로 급여수준 인상이 6개월 연기되어 1983~1988년까지 약 360억달러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다.

사회보장법 개정을 반영하여 1983년 실시된 재정추계에 의하면 OASI 기금이 206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96년 OASDI 신탁위원회의 연례보고서는 동기금이 2029년에 고갈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1983년 추계로부터 불과 13년이 지난 현재 기금 고갈 시점이 무려 34년이나 앞당겨지자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없이는 현 제도의 유지가 어려우리란 공감대가 미국내에서 널리 형성되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 신탁기금 현황 및 동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 파악을 위해 매 4년마다 사회보장자문위원회(Social Security Advisory Council)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라 『1994~96 자문위원회』는 미

국 사회보장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서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되기 위한 정책 대안을 1997년 1월 최종보고서로 제출하였다.

급속한 고령화가 기금 재정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건실화 노력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3. 미국 사회보장제도 현황

흔히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 불리우는 미국의 노후보장제도는 노령·유족·장애연금 및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 OASDHI)을 지칭한다. 동 제도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를 재원으로 연방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공적 연금제도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현물급여의 경우 노령·유족연금(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OASI) 신탁계정과 장애연금(Disability Insurance: DI) 신탁계정으로 구분되며 상기 두 계정은 흔히 OASDI 계정으로 불린다. 의료보장(Medicare)은 병

표 1. 미국 OASDHI제도 변천 과정

연도	OASDHI 지출 (10억달러)	OASDHI/ 국민순생산(%)	사회보장세 적용 소득 한도액(달러)	사회보장세율(%)	사회보장 수혜자/ 65세 이상 인구(%)
1945	0.3	0.1	3,000	2.0	6.2
1950	1.0	0.4	3,000	3.0	16.4
1955	5.0	1.4	4,200	4.0	39.4
1960	11.0	2.3	4,800	6.0	61.6
1965	17.0	2.6	4,800	7.3	75.2
1970	36.8	4.0	7,800	9.6	85.5
1975	78.4	5.5	14,100	11.7	90.4
1980	152.1	6.3	25,900	12.3	91.4
1985	257.5	7.2	39,600	14.1	91.7
1990	352.4	7.1	51,300	15.3	94.2

주: 상기 수치는 현금 급여 및 의료보장 지출을 합산한 것임. 사회보장세율의 경우 고용자와 피용자 부담금의 합산액임(1990년 기준으로 OASDI 세율: 12.4%, HI 세율: 2.9%). 1992년 OASDI 경우 사회보장세 적용 한도액이 55,500달러로 조정되었고, 의료보장(Medicare)은 130,200달러로 상향 조정되어 이원화되었음.

자료: Edgar K. Browning and Jacquelene M. Browning, *Public Finance and the Price System*, 4th Edition, Macmillan Publishig Company, New York, 1994.

원 보험(Hospital Insurance: HI) 신탁계정과 보충적 의료보험(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신탁계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현행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총 4개의 신탁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은 1945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사회보장지출의 경우 1945년 3억달러에서 1990년 3524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객관적 비교를 위해 미국 국민 순생산(NNP)과 견주어 보면 1945년 NNP의 0.1%에서 1990년 7.1%로 증가하였다. 주된 지출 증가요인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수 증가 및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지적되고 있다.

4. 사회보장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안

과거 사회보장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안은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75년 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도입된 기존의 물가연동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1983년 그린스펀(Greenspan)에 의해 주도되었던 위원회는 사회보장법의 개정을 이끌어내었다. 이와 같이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가 대부분 정책에 반영되었던 관례에 비추어 1997년 보고서도 미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1994년 미국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이 임명한 사회보장자문위원회가 1997년 1월 동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미행정부와 상원에 제출하였다.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향후 심각한 재정불안정이 예상되는 현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미국 사회보장 신탁 계정 현황

(단위: 10억달러)

	OASI[1]	DI[2]	HI[3]	SMI[4]
총자산(1995년말 기준)	458.5	37.6	130.3	13.1
1996년 수입	363.7	60.7	124.6	85.6
1996년 지출	308.2	45.4	129.9	70.4
순자산 증가분	55.5	15.4	-5.3	15.2
총자산(1996년말 기준)	514.0	52.9	124.9	28.3

주: 1)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2) Disability Insurance
3) Hospital Insurance 4)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자료: 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A *Summary of the 1997 Annual Reports*, Washington, D.C.,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Boards of Trustees, U.S.A., April 1997.

가. 사회보장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안

위원회가 제시한 3개의 안은 MB(Maintain Benefits)안, IA(Individual Accounts)안, PSA (Personal Security Accounts)안이다[2]. 상기 3안은 공통적으로 1997년 이후에 고용되는 주정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사회보장제도의 신규 가입대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 체계 개선 및 기금운용방식에 대해서 상기 3안은 각기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청 재정 추계에 의하면 IA안과 PSA안의 경우 2070년까지 기금 고갈을 연기시킬 수 있으며, MB안의 경우 주식 부문에 기금을 투자할 경우 재정불안정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 현 체제 유지·보완안(Maintain Benefits Plan: MB안)

MB안은 확정급여방식을 유지하며 1935년도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정건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3] 다음과 같다.

현 체제 유지·보완안(Maintain Benefits Plan: MB안)은 확정급여방식을 유지하며 1935년도 제정된 사회보장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장 보수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현재 사회보장 수혜자의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중 의료보장 HI 신탁계정에 적립되는 기금을 OASDI 계정으로 이체한다(기금 이체시기는 2010~19년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급여산정 기간을 현행 35년으로부터 38년으로 상향 조정한다(이 조치로 급여가 평균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45년 사회보장세를 1.6% 인상하여 총 12.4%인 현행 OASDI 세율을 총 14%로 상향 조정한다.
- OASDI 적립기금의 40% 한도까지 주식투자를 허용한다.

상기 기술된 항목중 주식투자 허용과 관련된 부문은 국민연금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전액 재무성 특별채권에 투자되는데 이러한 전통은 철저한 자본주의 이념에 따른

2)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Report of the 1994 ~96 Advisory Council on Social Security*, Vol.1,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S.A., January 1997.

3) Robert E. Moffit, *Reforming Social Security: Understanding the Council's Proposals*, The Heritage Foundation, U.S.A., January 1997.

정부 부문의 민간경제 불간섭원칙에 기인한 것이다. 주식투자와 관련된 MB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부터 주식투자를 허용하되 점진적으로 주식투자비율을 증가시켜 2014년 적립된 총신탁 기금의 40%를 민간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국 사적연금이 통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40~60%보다 적은 주식투자 비율인 40%는 고정된 비율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 35~4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기금의 운영은 대통령이 지명하여 상원이 인준한 『투자정책위원회』(Investment Policy Board)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위원회는 스텐다드와 푸어즈 지수(Standard & Poor's Index)와 같은 『보수적 시장 지수』(Alternative Passive Market Indexes)에서 투자대상을 택하도록 하고 투자담당자(Portfolio Managers)는 공개경쟁(Competitive Bid) 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 정부채권은 연 2.3%의 실질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민간 부문 주식수익률은 연 7%의 실질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두 부문간에 연 4.7%의 실질수익률 차이가 존재한다. 연 4.7%의 추가적인 수익률로 향후 예상되는 신탁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 해결을 제안하는 것이 MB안의 핵심이다. MB안은 확정급여제도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사회보장제도를 관리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확정갹출형 개인퇴직금계정 신설안 (Individual Accounts Plan: IA안)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회보장제도의 신규 가입대상으로 하며 급여산정 기간을 38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MB안과 동일하다. IA안의 기본 정신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개인의 노후대비 저축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98년부터 사회보장 가입자(고용주는 제외)가 부담하는 1.6%의 사회보장세를 신설하여 강제적인 개인퇴직계정(Mandatory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을 신설한다.
- 완전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은 현재 65세에서 2011년 67세, 이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83년에 70세가 되도록 한다.
-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급여증가를 가급적 억제한다.
- 맞벌이 부부의 급여산식은 유리하게, 홑벌이 부부는 불리하게 재조정한다. 현재 홑벌이 부부의 경우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은 배우자가 기본급여의 50%를 지급받고 있으나, 향후 33%로 하향 조정한다.

IA안이 제시하는 강제적인 개인 퇴직계정은 신설될 1.6%의 사회보장세로 운영되는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계정

인 점이 특징이다. 사회보장세 납세자는 법에 의해 규정된 제한된 범위내에서 자기 구좌로 투자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해당 구좌는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제외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식으로 축적된 개인구좌의 기금은 퇴직시점에 연금(Annuities)으로 전환되어 계좌 주인에게 지급된다. IA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확정급여형으로 되어 있는 미국 사회보장제도를 401(k) 또는 개인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과 같은 기업연금의 확정갹출형 개념을 도입한다는 점이다.

(3) 국민연금의 이원화안: 정액연금+개인저축계정(Personal Security Account Plans: PSA안)

PSA안은 1988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현 제도(약간은 수정된 것)에 남되 55세 미만 근로자들은 가입자 개인의 재량이 많이 허용되는 새로운 연방퇴직제도에 가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PSA안은 현재 1층 구조인 사회보장제도를 2층 구조(Two-tiered)의 전국민연금체제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 12.4%인 사회보장세 중 7.4%를 재원으로 일정 요건의 근로경력을 갖춘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금액의 급여(flat retirement benefit)를 지불하되 급여액은 최저생계비(Official Poverty Level)에 근접하게 책정하여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을 1층 구조로 한다.

국민연금의 이원화안(Personal Security Account Plans: PSA안)은 현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1층 구조로 책정된 7.4%이외의 5%를 재원으로 새로운 개인저축계정(Personal Security Account or Personal Savings Account: PSAs)을 신설하여 2층 구조의 새로운 전국민연금제도를 창설한다.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산조사(Earnings Test)를 폐지한다. 자산조사란 퇴직한 연금 수혜자가 연금 이외의 별도 소득원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감액한 후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저축계좌는 노후생활 목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며 소유자 재량으로 운영하되 투자대상 선정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구좌로부터의 기금인출이 62세부터 가능하며 적립된 원금 및 증식된 기금은 계좌 소유주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한다. 현 제도로부터 새로운 제도로 변경시 현 사회보장제도의 부채(현 수급자 및 미래 수급자에게 지불될 급여)로 인해 제도 이행비용(transition cost)이 발생될 것이다. PSA안 주창자들은 이행비용의 재원으로 연

표 3. 사회보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대안 비교

	MB안	IA안	PSA안
정책 제안	기존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임: 기금의 40%까지 주식 투자를 허용함.	기존 제도에 덧붙여 별도 개인 계좌 신설을 통한 강제 저축 규정 도입	점진적으로 현 제도를 폐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새로운 1층 구조 도입과 함께 강제 저축 규정에 따른 개인 계좌 신설로 2층 구조화함.
정책 논거	현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재정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부문에 투자 허용	현 제도 급여구조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강제 저축 규정을 통해 가입자에게 기금 운용의 재량권 일부를 부여함.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강제 저축 규정을 도입하되 2층 부문의 경우 가입자에게 재량권을 전부 위임함.
시행 예정일	2000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1998년 1월 1일
강제 저축 규정	없음.	추가적인 1.6% 사회보장세를 개인 저축 계좌에 납입하되 계좌는 정부가 관리 (government ledger)	현행 OASDI 12.4% 사회보장세 중 5%를 가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강제 저축 계좌로 이관
투자 규정	사회보장 기금 운영자 (manager)가 주식에 투자하도록 함.	IA 계좌 경우 정부가 추천하는 민간부문의 투자 신탁기금중에서 가입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함.	민간투자상담사(private broker)를 통해 정부가 허용하는 투자 대상의 범위에서 가입자가 PSA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함.
사회보장세 인상률	1.6%(2045년 시행)	1.6%	1.52%
사회보장세 운용내역	신탁 계정: 12.4%(2045년 이후 14.0%) 전액 운용	신탁 계정: 12.4% IA 계정: 1.6%	신탁 기금: 8.92% (7.4%+1.52%) PSA 계정: 5.0%

자료: Susan Miller, *The Market to the Rescue? The Promise and the Price of the New Social Security Investment Proposals,*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August 1997.

방정부 채권과 향후 72년 동안 1.5%의 추가적인 사회보장세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2층 구조에서 개인계좌 운용은 계좌 소유주 자신이 기금관리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으로 정해진 5%에 덧붙여 추가적인 사회보장세 납부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들의 노후소득이 가입기간 동안 적립한

총갹출금과 기금운용 실적에 연동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는 전혀 다른 확정갹출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5. 한국에서의 시사점

미국 사회보장제도 개혁논의중 국민연금의 이원화안(PSA안)은 현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 부분적으로 민영화(Privatized System)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강점은 연금 수혜자들이 그들의 생존기간과는 상관없이 물가에 연동되어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급여를 사망 시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할 경우 퇴직시점에 가입자는 자기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연금화 시켜야 한다. 민영화된 연금제도에서 기금의 연금화는 정의상 수급기간이 미리 설정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기간보다 연금수급자가 오래 사는 경우 수급자 개인이 상정했던 기간 이후의 생존기간에는 소득원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의 사회보장급여를 위해 후세대가 과중하게 부담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민영화된 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대간 소득분배의 공평성(fairness across generations)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득재분배와 노인 계층의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기에 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개인의 노후 대비 저축증대 유인을 제공하는 확정갹출형 개인퇴직계정안(IA안)의 개혁 정신이 주목된다.

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개인의 노후 대비 저축증대 유인을 제공하는 확정갹출형 개인퇴직계정안(IA안)의 개혁 정신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제도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보면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자문위원회가 신탁기금 추계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보건후생부 장관이 임명하는 사회보장자문위원회는 4년 임기로 구성되어 3가지 다른 경제환경(낙관적, 중간적, 비관적) 가정하에서의 중·장기적 신탁기금 재정추계치를 매년 미행정부와 상원에 보고하며 임기말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그 기능이 미국의 동 위원회와 비

4) Alan C. Garner, *Social Security Privatization: Balancing Efficiency and Fairness*,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U.S.A., Third Quarter 1997.

교시 형식적임에 비추어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기금 운용 기구로는 현 체제 유지·보완안(MB안)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지명하여 국회가 인준하는 『투자정책위원회』 같은 기관이 금융부문 투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한 개선논의가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언론을 비롯해 사회 많은 계층에서 정부가 기금운용을 잘못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기금운용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측면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국민연금 재정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도도입 초기의 저부담·고급여 급여산식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속히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